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공보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111~3

#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 2061 호      1997. 8. 11.(월)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조 려

제 3416 호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 3  
 제 3417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 조례 ..... 4  
 제 3418 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 조례 ..... 5  
 제 3419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 6  
 제 3420 호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조례 개정 조례 ..... 7

● 고 시

제 1997-254 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및 설계업 등록 ..... 8  
 제 1997-256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 9  
 제 1997-258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 결정 ..... 9

● 구 고 시

제 1997- 25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광진) ..... 10  
 제 1997- 77 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적승인(동대문) ..... 12  
 제 1997- 7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동대문) ..... 13  
 제 1997-177 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중랑) ..... 13  
 제 1997- 4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봉) ..... 14  
 제 1997- 4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봉) ..... 15  
 제 1997- 90 호 공공하수도 변경인가(서대문) ..... 15  
 제 1997- 4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영등포) ..... 16  
 제 1997- 38 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강동) ..... 23

<이면계속>

공  람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111~3

# 서울시보

선 립	기 관 의 장

제 2061 호      1997. 8. 11.(월)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조	례	
제 3416 호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3
제 3417 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개정조례	4
제 3418 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	5
제 341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	6
제 3420 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	7
● 고	시	
제 1997-254 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및설계업등록	8
제 1997-256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9
제 1997-258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	9
● 구	고	시
제 1997- 25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광진)	10
제 1997- 77 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및지적승인(동대문)	12
제 1997- 7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동대문)	13
제 1997-177 호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지적승인(중랑)	13
제 1997- 4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봉)	14
제 1997- 4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도봉)	15
제 1997- 90 호	공공하수도변경인가(서대문)	15
제 1997- 4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영등포)	16
제 1997- 38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적처분(강동)	23

<이면계속>

공 람																				

● 구 공 고

제 1997-172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중구) ..... 24

제 1997-192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성동) ..... 25

제 1997-123 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광진) ..... 25

제 1997-180 호 도로공사계획(중랑) ..... 26

제 1997-153 호 도시계획(안)공람(동작) ..... 27

제 1997-157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공람(관악) ..... 27

제 1997-158 호 봉천4-1구역1지구주택재개발사업공사완료(관악) ..... 29

제 1997-166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 30

● 공 고

제 1997- 7 호 재산변동사항공개(공직자윤리위원회)..... 30

● 인사발령

..... 31

● 입찰공고

제 1997- 45 호 용역입찰(북부교육청) ..... 33

제 1997- 30 호 물품구매입찰(성북교육청) ..... 34

제 1997-207 호 공영노상주차장운영사업자선정입찰제공고(서대문) ..... 35

● 기 타

출석통지서 ..... 37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416호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  
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묘지를 말한다"를 "묘지를  
말하며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등으로 구  
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평장"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함에 있  
어 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되지 않  
은 분묘형태를 말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㉔ 시장은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  
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시장이 정한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가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조  
성묘지 또는 비조성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1. 조성묘지 : 5제곱미터 이내
- 2. 비조성묘지 : 10제곱미터 이내
- 3. 납골묘지 : 20제곱미터 이내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㉔ 서울특별시민 및 시장이 정한 지역의  
주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장 사용료 중 대인 및 소  
인의 화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  
로 설치하여야 하며,"를 "분묘의 구조는 평  
장을 원칙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묘비를 세우고"를 "시장에 정한 규  
격의 묘비를 설치하고"로 한다.

별표 2 중 묘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내 용	요 금
묘 지	· 조성묘지(1제곱미터당) · 비조성묘지(1제곱미터당) · 조성묘지 분묘관리비(1제곱미터당)	42,500 6,700 6,7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국민의 매장선호의식과 화장제도를 접목한 납골묘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한정된 시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납골묘지를 개인형·부부형·가족형 등으로 구분·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납골묘지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제2조제4호).

나. 시장이 정한 지역 이외의 타 시도 거주자·미성년 사망자·사산아·개장유골을 매장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장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함(제4조).

다. 제한된 묘지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납골묘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묘지 1기당 사용면적 및 납골묘지의 사용면적을 조정함(제5조).

- 조성묘지 사용면적 : 6.6㎡ → 5㎡ 이내
- 비조성묘지 사용면적 : 6.6㎡ 이상 19.8㎡ 이내 → 10㎡ 이내
- 납골묘지 사용면적 : 6.6㎡ → 20㎡

라. 묘지사용료 정수단위를 기존 1평 단위에서 1제곱미터 단위로 변경하고, 화장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과 시장이 정한 지역 주민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는 이

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제6조 및 별표 2).

다. 새로이 묘지를 사용하는 경우 봉분이 없는 평장의 형태로 분묘를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묘비도 시장이 정한 규격만 설치할 수 있게 하여, 묘지에 대한 혐오감과 분묘설치·관리비용을 줄이도록 함(제13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시장 조 순 ☉

●서울특별시조례제3417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문화시설은 영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본문 및 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본문,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제5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감면범위는"을 "대관료의 감면범위는"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이 행한 대관허가 등의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직제개편 및 시립박물관 설치조례안의 공포·시행으로 종전의 문화시설운영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시립 미술관에 관한 업무가 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미술관 업무의 문화과 이관에 따라 종전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함(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8조·제30조·제32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문에 공포한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418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

시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관리실장
2. 교통관리실장
3. 건설안전관리본부장
4. 지하철건설본부장
5. 도로국장
6. 도시계획국장
7.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
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국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5조제2항 중 "교통국 교통기획과장"을 "교통관리실 교통운영과장"으로, "교통기획과 교통운영계장"을 "교통운영과 교통안전계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기획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맞도록 관련 직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맞도록 위원회 위원·간사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립에 따라 동 공사의 사장을 위원으로 추가함(제3조, 제5조, 제6조).

가. 위원 직명변경

- 종합건설본부장 → 건설안전관

- 리본부장
- 교통국장 → 교통관리실장
- 나. 위원추가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다. 간사 직명변경
- 교통국 교통기획과장 → 교통관리실 교통운영과장
- 라. 서기 직명변경
- 교통기획과 교통운영계장
- 교통운영과 교통안전계장
- 마. 실무위원회 위원장 직명변경
- 교통국장 → 교통기획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시장 조·순 @

◎서울특별시조례제3419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조4,000억원"을 "3조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기획관"으로, "투자관리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 전"을 "35일 전"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2월전"을 "35일 전"으로 하고, 제2항 중 "4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

며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를 "3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2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사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사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 승인권 변경(제3조제2항)

· 내무부장관 → 시장

나. 공사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자본금 증액(제4조제1항)

· 2조4,000억원 → 3조원

다. 사업년도 개시 전 시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기한 변경

(1) 사업계획서 : 3월 전 → 35일 전(제14조제1항)

(2) 예산서 : 2월 전 → 35일 전(제16조제1항)

라. 사업년도 종료 후 시장에게 제출할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 및 결산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규정(제16조제2항)

- (1) 결산서 : 4월 이내 → 3월 내
- (2) 첨부서류

- 현행 : 별도규정 없음.

- 개정안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마. 결산결과 손익금의 처리순위 변경(제18조제1항, 제2항)

- (1) 이익금

- 현행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 3. 차기이월금

- 개정안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

- (2) 손실발생시

- 현행 : 1. 미처분 잉여금 2. 사업준비금

- 개정안 :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바. 보수규정의 별도 사전승인조항 삭제(제22조제2항제2호)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사업계획서 및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이 포함된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기준에 관한 시장의 별도 승인규정을 삭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시장 조 순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420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층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구 내 별도의 공공대피소를 건립하거나 주변에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지하층이 확보되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명시한 지구는 지하층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별 표>**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제18조 관련)**  
 (단위 : %)

건축행위	규 모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특례제한 건축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신축건축물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증·개축 등 기타		80 이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 건축법시행령상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은 지하층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도시저소득층에게 재정부담 내지 민원분쟁을 야기하고 실효성이 적은 지하층 설치를 면제 내지 완화하도록 하고,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상 완화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13조제2항 신설

○ 5층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공대피소를 건립하거나 주변에 유사사 대피할 수 있는 지하층이 확보되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명시한 지구는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층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7-254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및설계업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및 설계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종 류	등록일자
서울S-1-125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김영재	강남구 신사동 563-17	종합감리업	97. 7. 29
서울S-1-126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한규봉	강남구 포이동 209-18	종합감리업	97. 7. 29

등록번호	업 세 명	대표자	소 재 지	종 류	등록일자
서울S-1-127	(주)아도무종합건축사 사무소	장석웅	강남구 도곡동 458-2	종합감리업	97. 7. 29
서울S-1-128	(주)정명기술단	이정환	강남구 도곡동 457-1	종합감리업	97. 7. 29
서울S-1-129	(주)에이.이.지	심재근 장병희	성북구 삼선동 5가 298-2	종합감리업	97. 7. 29
서울S-2-068	(주)성광감리단	윤도태	강서구 화곡동 401-22	전문감리업	97. 7. 29
서울S-2-069	성진엔지니어링	이재출	관악구 봉천동 1680-29	전문감리업	97. 7. 29
서울S-2-070	문엔지니어링(주)	문헌일	영등포구 여의 도동 14-8	전문감리업	97. 7. 29
서울E-2-092	기술사사무소 은진엔지 니어링(주)	이종은	송파구 가락본 동 49-6	전문설계업 1종	97. 7. 29
서울E-2-093	문엔지니어링(주)	문헌일	영등포구 여의 도동 14-8	전문설계업 1종	97. 7. 29

●서울특별시고시제1997-256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 계획과와 관악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사 설 명	위 치	규모(m <sup>2</sup> )	비 고
결정	전기공급설비	관악구 봉천동 870-15 일대	1,259.5	154kV급 봉천변전소 신설(전물 지하 3층 ~ 지하 6층)

●서울특별시고시제1997-258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 법 제1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  
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지역개  
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고교	강남구 개포동 12-2	15,487.3	감) 15,487.3	0	
변경	학교	고교(경기기 계공)	노원구 하계동 78 일대	132,230	감) 7,153	125,077	· 경기기계공고 및 연촌초등교 일부를 특수학 교로 결정 · 구적 도차 정 정
변경	학교	초등교(연촌)	노원구 하계동 152 일대	21,637	감) 4,174	17,463	
결정	학교	특수교	노원구 하계동 154-2 일대	-	신설	7,818	
변경	학교	초등교→고교	노원구 하계동 251-9 일대	11,344.8	-	11,344.8	· 면적 변경없는 등급 변경
변경	학교	초등교→고교	도봉구 쌍문동 468 일대	20,857	-	20,857	"
변경	학교	초등교→고교	도봉구 창동 694-10 일대	17,945	-	17,945	"

※ 관련도면 : 생략(서울시 도시계획국 시  
설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지역  
개발과 및 지적과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고 시

●광진구고시제1997-25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1997-112호  
(97. 7. 14)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  
계획에 따라 공람공고한 바 있는 군자동

374-4, 5, 6 지상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  
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주차  
장)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관진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8. 11

광진구청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비고	
광진구 군자동 374-4, 5, 6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 노외주차장		331m'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다.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 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아래 마.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아래						
○ 건축물(지장물)조서 군자동 374-4, 5, 6 지상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소재지	구조	주용도	규모	소유자	비고	
광진구 군자동 374-4, 5, 6	RC조	공동주택(현 근생시설)	- 지상 6층, 지하층(현 지상 1층, 지하층) - 연면적 : 2,131m'(현 442.25m')	고광용 마정호		
○ 토지조서 군자동 374-4, 5, 6 지상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주	주소	비고
군자동	총면적		331	공동소유		
	374-4	대	53	○ (주)대한건설인터내셔널 ○ 마정호	○ 강남구 신사동 587-23	
	374-5	대	195		○ 노원구 상계동 140-110	
	374-6	대	83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 소유자 명단						
소유물 구분	주소		성명		비고	
토지	강남구 신사동 587-23		(주)대한건설인터내셔널			
	노원구 상계동 140-110		마정호			
건축물(지장물)	강남구 청담동 123-42 신영주력 302		고광용			
	노원구 상계동 140-110		마정호			

## 이 해 관 계 인 명 단

연번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비 고
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④ 109-702	권항복	가압류	
2	강북구 번동 234 주공④ 402-404	김병하	가압류	
3	군포시 산본동 1146-11 우록④ 706-1203	송상석	가압류	
4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223	윤재호	근저당	
5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352	이문열	근저당	
6	관악구 봉천동 1617-20	문광필	근저당	
7	양천구 신원동 591-1 신안약수④ 1-702	오복주	근저당	
8	성북구 길음동 917-5	강기홍	근저당	
9	노원구 중계본동 대림역산④ 101-905	정철희	가압류	
10	강남구 삼성동 152-27	김중희	가압류	
11	노원구 하계1동 12블록 삼익④ 3-103	고정기	가압류	
12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2-2	여병택	가압류	
1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주)서현쇼팽	가압류	
14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주)	근저당	
15	대구시 남구 대명동 58-7	명덕신용협동조합	근저당	
16		광진구청	지분압류	

## ●동대문구고시제1997-7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및지적승인

1. 우리 구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시행정권한 위임규칙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

- 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조서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8. 11  
동대문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고
결정	공공공지	-	동대문구 청량리동 57-19 일대	389.3	신설

나. 관련도면 :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동대문구고시제1997-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

1. 동대문구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의거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8. 11  
동대문구청장

-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 구분	규 모				기능	면적 (m)	시 점	중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7		140	장안동 195-15	장안동 237-2	일반 도로	* 폭원 변경없이 선형일부 변경
변경	중로	2		17	국지 도로	140	장안동 195-15	장안동 237-2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제1997-177호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53호(97. 5. 9) 로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

여 지적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8. 11  
중랑구청장

-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의 시설 (도시철도)	위 치	규 모(m <sup>2</sup> )	비 고(m <sup>2</sup> )
변경	철도	지하철 6호선 (태능 앞→화랑대정거장)	중랑구 목동 39 앞	A=5,298→9,816	증 4,518
		지하철 6호선 (봉화산정거장)	중랑구 신내동 724 앞	A=4,752→8,120	증 3,368

구분	시설명	세분의 시설 (도시철도)	위 치	규 모(㎡)	비 고(㎡)
신설	철도	지하철 6호선 (환기구)	중랑구 목동 39-9 일대	A=118	환기구
			중랑구 목동 16-8 일대	A=291	환기구
			중랑구 신내동 728 일대	A=226	환기구
			중랑구 신내동 674 일대	A=237	환기구
			중랑구 신내동 314-3 일대	A=122	환기구

※ 지하철 6호선(태능 앞→화랑대정거장)  
 변경결정된 증가면적 A=4,518㎡ 중 노원  
 구를 제외한 중랑구 내만 지적승인 및  
 고시함.  
 나. 관련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비치도  
 면과 같음)  
 ○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정비과(490-  
 33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고시제1997-4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  
 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8. 11

도 봉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중구 서소문동 120-23 동아  
 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유성용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위치 : 도봉구 도봉동 62-4 외 15필  
 지

나. 사업시행면적

- 1) 사업면적 : 22,792㎡
  - 2) 대지면적 : 18,692㎡
  - 3) 도로개설면적 : 4,100㎡
  - 4) 건축면적 : 4,351.24㎡
  - 5) 연면적 : 92,565.07㎡
- 다. 규모 : 지하 2층, 지상 21층 아파트  
 8동 5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계획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건폐율	23.19%	23.28%	+0.09%
용적률	341.55%	344.41%	+2.86%
건축면적	4,335.29㎡	4,351.24㎡	+15.94㎡
연면적	92,460.05㎡	92,565.07㎡	+105.01㎡
세대수	622세대	584세대	-38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97. 11. ~ 2000. 8.
5. 의제사항 :

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

<p>계획의 결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p> <p>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p> <p>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관련인에게 보입니다.</p> <p><b>●도봉구고시제1997-46호</b>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7. 8. 11</p>	<p style="text-align: center;"><b>도 봉 구 청 장</b></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중구 서소문동 126-23 동아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유성용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위치 : 도봉구 도봉동 51-3 외 6필지 나. 사업시행면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면적 : 6,123㎡</li> <li>2) 대지면적 : 5,986㎡</li> <li>3) 도로개설면적 : 137㎡</li> <li>4) 건축면적 : 1,453.01㎡</li> <li>5) 연면적 : 19,752.78㎡</li> </ol> <p>다. 규모 : 지하 1층, 지상 14층 아파트 1동 169세대 및 부대시설</p>
--	---

라. 사업계획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건폐율	24.20%	24.27%	+0.07%
용적률	251.49%	251.83%	+0.34%
연면적	19,528.71㎡	19,752.78㎡	+224.07㎡

<p>4. 사업시행기간 : 1997. 11. - 1999. 11.</p> <p>5. 의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p> <p>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관련인에게 보입니다.</p> <p><b>●서대문구고시제1997-90호</b> 공공하수도변경인가</p>	<p>1. 97하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p> <p>2.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하수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7. 8. 11 서대문구청장</p>
---	--



가. 사업내용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홍은2동 11-450 ~ 9-347까지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D=450mm L=57m	D=600mm L=57m	(주) 동일토건	97. 7. 30 ~ 8. 10	위치도 별첨
나. 사용할 토지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1	홍은동 9-346	대	33.0㎡	서울특별시		
2	홍은동 9-668	대	112.0㎡	서울특별시		
3	홍은동 11-896	도	15.0㎡	서울특별시		
<p>●영등포구고시제1997-47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p> <p>1.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아래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당초인가 내용 중 일부내용의 변경이 요구되어 변경내용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p> <p>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건물소유주와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7. 8. 11 영 등 포 구 청 장</p> <p>○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조서 가. 사업개요</p>						
사 업 명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변 경 사 유	
신길로 ~ 도로확장공사	신길3동 347-309 ~ 347-340간	B=15→30m L=160m	인가일로부터 3년간	건설부고시 제393호(78. 12. 17)	· 일부물건 변동	
신길1동 주위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신길1동 462번 신길동 888 ~ 889간	B=6m L=150m	인가일로부터 3년간	조선총독부 고시 제22호(39. 1. 19)	· 일부물건 누락	
영등포1동 도로개설공사	영등포1동 602-67 ~ 602-5간	B=12m L=170m	인가일로부터 3년간	건설부고시 제177호(62. 12. 8)	·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정청(건설부고시 제768호(64. 1. 24) →건설부고시 제177호(62. 12. 8)) 구보계재→시보계재	

사업명	위치	규모	사업기간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변경사유
신길동 298 - 290간 도로개설공사	신길3동 298 - 290	B=8m L=60m	인가일로부터 3년간	건설부고시 제768호(64. 1. 24)	· 도시계획선 분할로 토지면적 변경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다. 사업의 시행자 성명, 주소 :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사 : 따로붙임(변경내용).  
 마.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

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변경내용).

바.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당초 인가 사항과 같음.

※ 문의처: 영등포구청 토목과(670-3405

- 7)

###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구분	구조	용도	공부상 면적	저축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신길동 347-69	당초		수도		1식	박낙완			
		변경	계			의			제외	
2	" 347-265	당초	누			락				
		변경		화장실		1	최희수			추가
3	" 347-122	당초	누			락				
		변경		욕탕		3	조동제			추가
4	" 347-260	당초	누			락				
		변경		계단		1식	이종태			추가
5	" 347-196	당초	누			락				
		변경		간판		1식	이상국			추가
				간판		1식	서성호			
6	" 347-63	당초	누			락				
		변경		간판		1식	윤 단			추가
				간판		1식	김안석			
				간판		1식	신경순			
		간판		1식	박만영					

영 업 권 조 서								
연번	영업장소	구분	상 호 명	허가 및 사업자 등록유·무	사 업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신길동 347-224	당초	금강상회		유영권			
			우신그릇상회		최영규			
		변경	제 의					금회구간 의 물건
2	" 347-300	당초	계입천국		김동준			
			금천상회		미상			
		변경	제 의					금회구간 의 물건
3	" 347-294	당초	대흥공인중개 사무소		한규동			
			대흥슈퍼		이명옥			
		변경	제 의					
4	" 347-20	당초	유신지물장식		김동준			
			다나약국		박광운			
		변경	제 의					금회구간 의 물건
5	" 347-65	당초	신흥자		이동택			
		변경	제 의					금회구간 의 물건
6	" 347-219	당초	누 락					
		변경	비전미용실		김후년	추가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구분	구 조	용 도	저축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신길동 459-1	당초	블록/기와	주택	22.9	주동호	신길동 459-1	
			블록	담장	8m			
			철	대문	1식			
				정원수	1식			

연번	소재지	구분	구조	용도	저축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산길동 459-1	변경	블록/기와	주택	22.9	주동호		변경없음
			블록	담장	8m			"
			철	대문	1식			"
				정원수	1식			"
			벽돌/슬래브	보일러실	1.4			추가
			콘크리트	계단	1식			"
	정화조	1식	"					

## 토 지 조 서

물건 번호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등포1동 602-210	대	47	대	국(국세청)	
2	" 602-202	대	68	대	고성권 영등포동 602-50	
3	" 602-205	대	4	대	김성수 영등포동 602-53	
4	" 602-49	대	99	대	김기상 영등포동 602-49	
5	" 602-197	대	8	대	이대원 영등포동 602-33	
6	" 602-157	대	26	대	국	
7	" 602-47	대	17	대	국(국세청)	
8	" 602-201	대	19	대	노종환 영등포동 602-44	
9	" 602-123	대	23	대	국(세무부)	
10	" 602-196	대	5	대	임진화 영등포동 산 1	
11	" 602-196	대	2	대	오의진 영등포동 602-25	
12	" 602-194	대	12	대	손 근 영등포동 602-21	
13	" 602-111	대	2	대	국(재무부)	
14	" 602-193	대	10	대	김치권 영등포동 324-13	
15	" 602-192	대	2	대	국(재무부)	
16	" 602-191	대	5	대	한갑수 영등포동 602-14	

물건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7	영등포1동 602-190	대	4	대	이 박	영등포동 602-12
18	" 602-189	대	8	대	최삼래	영등포동 602-11
19	" 602-188	대	15	대	박장수	영등포동 602-10
20	" 602-180	대	20	대	국(재무부)	
21	" 602-187	대	20	대	허충무	영등포동 602-8
22	" 602-155	대	20	대	국(재무부)	
23	" 602-200	대	37	대	장기영	영등포동 602-39
24	" 602-199	대	41	대	전경식	영등포동 602-38
25	" 602-198	대	88	대	신종분	도림동 98-2
26	" 602-116	대	66	대	남중금	영등포동 602-116
27	" 602-115	대	36	대	국(재무부)	
28	" 602-60	대	3	대	김영주 외 1인	영등포동 602-60
29	" 602-66	대	829	도	국(재무부)	
30	" 602-34	대	1,856	도	국(재무부)	
31	" 602-195	대	2	도	영등포구	
32	" 602-7	대	69	대	국(재무부)	
33	" 602-122	대	30	대	국(재무부)	
34	" 602-121	대	2	대	국(재무부)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구조	용도	저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등포동 602-48	콘크리트/영육개결	대문	1식	대한불교	영등포동 602-18
		개				
		블록	담장	5m		
		목련		1주		
		화초사과		1주		
		모과나무		1주		
		철죽		1주		

연번	소재지	구조	용도	저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2	영등포동 602-138	목조/외집	주택	10	이철중 영등포동 602-18	
		블록/슬레이트	화장실	2		
		앵글천막/블록셔터	차고	1식		
		선라이트	비가리	1식		
		철	대문	1식		
3	" 602-34	벽돌/슬레이트	주택, 광고	15	이남수 영등포동 602-34	
4	" 602-39	벽돌/슬래브	주택	10	장기영 영등포동 602-39	
		목조/외집				
		철	대문	1식		
		블록	담장	3m		
		배나무		1주		
		향나무		2주		
		은행나무		1주		
		벚나무		1주		
		복숭아나무		1주		
		모과나무		1주		
		절래		1주		
		장미		1주		
		꽃나무		1주		
5	" 602-38	RC연외평슬래브	주택(다가구)	44	전경식 영등포동 602-38	
		연외	담장	12m		
		도끼다시	계단	1식		
		철	대문	3식		
6	" 602-8	목조/외집 블록/슬래브	주택 화장실	12	허충무 영등포동 602-8	
7	" 602-7	블록/슬레이트	주택 점포	79.52	정환우 영등포동 602-87	
8	" 602-37	목조 및 블록 기외/슬래브	주택	93	신종분 영등포동 602-37	
		목조	대문	1식		

연번	소재지	구조	용도	저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8	영등포동 602-37	벽돌	담장	10㎡	신종분	영등포동 602-37
		슬래브/벽돌	화장실	1식		
9	" 602-116	목조/와즙 연와조/슬래브	주택(1층)	88	남궁금	영등포동 602-116
			주택(2층)	80		
			주택(3층)	80		
			주택(4층)	75		
10	" 602-5	슬레이트/연와조	주택(지층)	10	김세채	영등포동 602-5
		슬레이트/벽돌	점포(1층)	10		
		적벽돌/슬래브	주택(지층)	5		
		적벽돌/슬래브	점포(1층)	5		
11	" 602-9	목조/와즙	주택	2	정용운	신길동 264-1
12	" 602-10	철	대문	1식	박창수	영등포1동 602-10
		적벽돌	담장	10㎡		
13	" 602-11	연와조/슬래브	주택(2층)	1	최삼례	영등포1동 602-11
		연와조/슬래브	주택(3층)	1		
		철	대문	2식		
		벽돌	지하실(보일러실)	1식		
		적벽돌	담장	4㎡		
14	" 602-12	철	대문	1식	이 박	영등포1동 602-12
		적벽돌	담장	6㎡		
15	" 602-14	철	대문	1식	한갑수	영등포1동 602-14
		적벽돌	담장	5㎡		
16	" 602-1	철	대문	1식	김연순	영등포1동 602-19
17	" 602-20	철	대문	1식	이종규	신길동 602-20
		적벽돌	담장	5.5㎡		
18	" 602-6	블록/슬래브	주택	5	이병석	영등포동 602-6
		블록/슬래브	화장실	2		
		철	대문	1식		

연번	소재지	구조	용도	저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9	영등포동 602-115	시멘벽돌/슬래브	공장(1층)	59	홍연옥 신길2동 190-126		
			점포(2층)	59			
20	" 602-134	목조/기와	주택	2	최우식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582		
		시멘블록/기와	화장실(창고)	5			천마타운 229-807
21	" 602-67	목조·시멘블록/ 기와	주택	96	한정숙 영등포1동 602-67		
			시멘블록/슬레이트	화장실			3
			철	대문			1식
			시멘블록	담장			1식
22	" 602-33	시멘블록/기와	주택	8	이대원 영등포1동 602-33		
23	" 602-122	시멘블록/슬레이트	점포/주택	29	오초환 신길1동 151-4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신길3동 298-40	당초	담	206	도	김종율 강서구 목동 551-6 무림연립 가-202		토지분할 로 면적 감소
		변경	담	205	대, 도	김종율 강서구 목동 551-6 무림연립 가-202		

●강동구고시제1997-3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제9조의2 제4항의 변경  
신고 위반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을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8. 11.  
강 동 구 청 장



일련 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영업정지 일 시	영업정지기간	사 유	근거 법령
1	95-25-4	(주) 스파 프라자	방광열	성내동 415-8	97. 8. 1	97. 8. 1 ~ 97. 9. 15	변경신고 위반	주축법 제7조

## 구 공 고

### ●중구공고제1997-172호

####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하여 동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6조의2,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서울특별시행정 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안에 반영하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7. 8. 5 ~ 1997. 8. 19(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 (260-1386~8)

1997. 8. 11  
중 구 청 장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세 부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기정	도로	지하도로	중구 을지로6가 18-11	폭 = 13m 연장 = 49m 면적 = 832.5m <sup>2</sup>	통로 : 593.7m <sup>2</sup> 상가점용 : 238.8m <sup>2</sup>
변경	도로	지하도로	중구 을지로6가 18-11	폭 = 13m 연장 = 49m 면적 = 988.0m <sup>2</sup>	통로 : 749.2m <sup>2</sup> 상가점용 : 238.8m <sup>2</sup> 중) 155.5m <sup>2</sup> (기존 35.7m <sup>2</sup> 는 폐지, 191.2m <sup>2</sup> 는 신규설치)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기정	녹지	중구 광희동2가 106 일대	4,200	일부지역 폐지(합 1,218m <sup>2</sup> )
변경	녹지	중구 광희동2가 106 일대	2,982	

<p>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p>								
구분	등급	유별	도로의 사용형태	폭 (m)	연장 (m)	시 점	종 점	비고
결정	소로	3 류	일반도로	6	110	중구 신당동 289-94	중구 신당동 289-148	
<p>라. 관계도면 : 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p> <p>●성동구공고제1997-192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8조 열사용기자                  재관리규칙 제50조 규정을 위반한 다음 시</p>					<p>공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시공정지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7. 8. 11                  성 동 구 청 장</p>			
<p>○ 행정처분사항</p>								
등록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비고		
72	성우설비공사	성수1가 2동 7-14	최공식 외 1	교육미이수	영업정지 (30일) (97. 8. 5 ~ 9. 3)	청문참석		
<p>●광진구공고제1997-123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                  가를위한공람</p>					<p style="text-align: right;">1997. 8. 11                  광 진 구 청 장</p>			
<p>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1997-22호(97.                  7. 19)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노유동 9-13, 14 도시계획                  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7                  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                  고 합니다.</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                  유동 9-13, 14</p>			
<p>2. 토지 등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람                  공고로 갈음합니다.</p>					<p>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사회복                  지시설)</p>			
<p>3. 관계도서는 광진구 가정복지과와 건설관                  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                  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                  랠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다. 사업의 명칭 : 동부여성발전센터 건                  립</p>			
					<p>라. 사업의 규모 : 동부여성발전센터 건                  립 6,000㎡ - 지하 1층, 지상 4층</p>			
					<p>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인                  가일로부터 3년간</p>			
					<p>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조서 :                  별첨(생략)</p>			
					<p>아. 공람장소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및                  건설관리과</p>			
					<p>자.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  
복지과(450-1490~2)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중랑구공고제1997-180호

도로공사계획

1. 다음과 같이 우리 구에서 97하반기에 시

행할 도로정비공사계획을 확정하였기에  
도로법시행령 제24의3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 8. 11  
중랑구청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	공 사 명	위 치	사 업 규 모	공사시행기간	
				착공	준공
중로(중앙해 수로길)	목2동 240~ 246 주변 외 1개소 도로정 비공사	목2동 240~ 246 주변	B=2~4m, L=1,100m 고압블록포장 22.4@	97. 9. 1	97. 12. 31
소로		중화2동 324 주변	B=6m, L=300m 아스 콘데크우기 14.7@	97. 9. 1	97. 12. 31
소로	중화1동 285 주변 도로정 비공사	중화1동 285 주변	B=3~6m, L=180m 아스콘데크우기 38@	97. 9. 1	97. 12. 31
소로	면목1동 86 주변 외 2개 소 도로정비 공사	면목1동 86 주변	B=6m, L=180m 아스 콘데크우기 9.3@	97. 9. 1	97. 12. 31
		면목4동 378 주변	B=2m, L=18m 계단설치 1식 고압블록 포장 0.3@	97. 9. 1	97. 12. 31
		면목4동 371 주변	B=3.5m, L=320m 고 압블록포장 9@	97. 9. 1	97. 12. 31
소로	상봉1동 49~ 74 주변 외 1 개소 도로정 비공사	상봉1동 49 ~74 주변	B=8~20m, L=300m 아스콘데크우기 15.6@ 고압블록포장 4.7@	97. 9. 1	97. 12. 31
		면목3동 467 주변	B=6m, L=450m 아스 콘데크우기 24@	97. 9. 1	97. 12. 31
소로	중화3동 306 ~304 주변 외 1개소 도 로정비공사	중화3동 306 ~304 주변	B=3m, L=400m 고압 블록포장 10.7@	97. 9. 1	97. 12. 31
		망우3동 426 ~면목8동 17 주변	B=6m, L=435m 아스 콘데크우기 24.5@	97. 9. 1	97. 12. 31

◎동작구공고제1997-153호

도시계획(안)공람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997. 8. 11  
동 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97. 8. 2 ~ 97. 8. 16(14일간)
2.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820-1385~7)
3.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기타 :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계획(안) 조서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상세계획구역	동작구 신대방동 597 일대	9,100	대림상세계획구역(A=70,000㎡)에 추가 결정

◎관악구공고제1997-157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공람

1. 관악구고시 제1997-36호(97. 5. 21)로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된 신림본동 동청사 신축공사의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7. 8. 11  
관 악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97. 8. 11 ~ 97. 8. 24(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총무과 (880-3313~4)

다. 공람개요 (사업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65, 66, 90-121(3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용의 청사, 신림본동 동청사 신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대지 681.40㎡, 건물연면적 1,430㎡, 지하 1층, 지상 4층
4.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관악구청(관악구 봉천동 1570-1)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조서
8.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물 건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의 규격	수 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신림본동 1641-65	대지	478.40㎡	478.40㎡	대지	왕정환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235 (근저당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 한미은행(논현동지점)) (지상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 한미은행(논현동지점))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30 한일은행(신림동지점))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30 한일은행(신림동지점))	
2	신림본동 1641-66	대지	183.00㎡	183.00㎡	대지	이병길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48 타워④ 5-707 (근저당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1 평화은행(사당역지점))	
3	신림본동 90-121	대지	20.00㎡	20.00㎡	대지	이병길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48 타워④ 5-707 (근저당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1 평화은행(사당역지점))	
물 건 조 서							
연번	물 건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의 규격	수 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신림본동 1641-66	건물	평옥개, 연와조	128.40㎡	건물	이병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타워④ 5-507 (근저당권 강남구 역삼동 823-21 평화은행(사당역지점))	
		대문	철문, 시멘블록	1식	대문		
		정원		1식	정원		
		담장	벽돌 시멘블록	높이 : 1.40m 길이 : 27.50m 높이 : 1.40m 길이 : 8.50m	담장 담장		

연번	물건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의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	신림본동 1641-66	감나무		1그루		이병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타워④ 5-507 (근저당권 강남구 역삼동 823-21 평화은행(사당역지점))	
		포도나무		1그루			
		향나무		1그루			
		사철나무		3그루			
		단풍나무		1그루			
		장미		3그루			

영업권조서

연번	위치	업종	업소명	소유자	
				성명	주소
1	신림본동 1641-65	주차장	신림주차장	박의출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412-379
2	신림본동 1641-65	카센터	형제카센터	최성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3-4 은하수④ 308-203
3	신림본동 1641-65	목공소	태홍인테리어	박연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95 도시개발공사 성산④ 105-108
4	신림본동 1641-65	잡화점	김미상사	김명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 공작④ 301-1107

●관악구공고제1997-158호

봉천제4-1구역1지구주택재개발사업  
공사원료

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73. 12. 1)로 구역지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18호(75. 2. 8) 주택재개발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343호(80. 10. 13)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악구고시 제50호(97. 7. 25)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된 봉천제4-1구역 1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공사원료 공고합니다.

1997. 8. 11

관악구청장

가. 사업명칭 : 봉천제4-1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나. 시행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일대

다. 면적 : 18,218.3㎡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마. 사업시행내역

1) 도로개설 : B = 4 ~ 10m, L = 730m

2) 주택건설 : 연립 및 다가구 주택 218세대(동양연립, 우영연립 다동)

우영연립 라동, 우영연립 마동, 낙원연립, 대성연립주백, 덕산빌라, 봉천 485 다가구주택)

●송파구공고제1997-16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8. 11

송 파 구 청 장

- 가. 양도인가연월일 : 1997년 8월 1일
- 나.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허번호 : 95-서울-10-96)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번호 : 95-서울-13-35)
- 다.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 양도자
    - 상호 : 서공건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20-15

· 대표자 : 공노석

○ 양수자

· 상호 : 일심주대개발(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20-15

· 대표자 : 공노석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1997-7호

재산변동사항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997. 8. 11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소속	서울특별시	② 지 위	前 여성정책보좌관	③ 성 명	신 태 희
④ 본인과의 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 액 (천원)	⑧ 변동사유
본 인	대 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16-755 일부매도(347㎡ 중 52.2㎡ 매도)		△60,030	차남사업자금 등 지출
	예 금	한일은행 예금증가		2,660	분급 등 저축
	채 무	씨티은행 대출금감소		6,000	일부상환
(총 계)				△51,370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② 직 위	前 의 원	③ 성 명	나 태 군
④ 본인과의 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 액 (천원)	⑧ 변동사유	
본 인	예 금	상업은행 예금감소 평화은행 예금증가		△27,381 10,943	교육바, 변호사비 상업은행계과변경	
(소 계)				△16,343		
(총 계)				△16,438		

**인 사 발 령**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발령 제384호(1997. 8. 1)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시보 조상태  
지방농촌지도사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시보 김문일  
지방농촌지도사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시보 이지영  
지방농촌지도사

농촌지도소 지방농촌지도사 시보 황영주  
지방농촌지도사

서울특별시장

**6급 토목직 공무원 복직**

발령 제393호(1997. 7. 29)

하수국대기 지방토목주사 전세기 복직을  
명함 하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6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전출**

발령 제394호(1997. 8. 1)

서울특별시(연료과) 지방화공주사 고흥  
열 특허청 전출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 지방기

제주사보 최주식 경북 영천시 전출  
서울특별시장

**9급 수도토목직공무원 복직**

발령 제395호(1997. 7. 30)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토목서기보 김  
정엽 복직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6급 토목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396호(1997. 7. 30)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 정용식 원  
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기술직 및 기능직공무원 징계처분**

발령 제397호(1997. 7. 31)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수도) 9등급  
박용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해임"에 처함

시정개발담당관 지방별정직 7급상당 이  
순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정직 2월"에 처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 10등  
급 김철영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수의주사 이경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2월"에 처함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방호원(경비) 9등  
급 이경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 10등  
급 윤상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주택개발과 지방토목주사보 김재섭 불문  
(경고)(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5급 이하 기술직 및 기능직공무원  
징계처분 변경

발령 제398호(1997. 7. 31)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사무관 김홍석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7-23  
97. 6. 23)에 의하여 97. 3. 6자 "감봉 1  
월" 처분을 동일자 "견책"으로 변경함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토목주사 최신갑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7-22  
97. 6. 23)에 의하여 97. 3. 6자 "감봉 3  
월" 처분을 동일자 "감봉 2월"로 변경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 9등급  
송현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  
건 97-32 97. 6. 23)에 의하여 97. 4. 1자  
"감봉 1월" 처분을 동일자 "견책"으로 변경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정규임용

발령 제399호(1997. 7. 27)

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기계원 10등급 시  
보 김윤식 지방기계원 10등급에 임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휴직

발령 제400호(1997. 7. 31)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지방조  
무원(검침) 9등급 정우영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3급 공무원 파견(연장)

발령 제402호(1997. 8. 3)

내무국 지방부이사관 김형수 시설관리공  
단파견(97. 8. 3 ~ 98. 8. 2)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03호(1997. 8. 1)

상수도사업본부(은평수도사업소) 지방조  
무원(검침) 9등급 김희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독도정수사업소) 최귀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405호(1997. 8. 4)

신규 권혁주 · 지방전기원 10등급 시보  
에 임함 · 3호봉을 급함 · 난지하수처리  
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이준석 · 지방전기원 10등급 시보  
에 임함 · 2호봉을 급함 · 난지하수처리  
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홍용현 · 지방전기원 10등급 시보  
에 임함 · 1호봉을 급함 · 난지하수처리  
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이원준 · 지방전기원 10등급 시보  
에 임함 · 1호봉을 급함 · 난지하수처리  
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윤기관 · 지방전기원 10등급 시보  
에 임함 · 3호봉을 급함 · 난지하수처리  
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마계훈 · 지방기계원 10등급 시보  
에 임함 · 3호봉을 급함 차량정비사업  
소 근무를 명함

신규 김우현 · 지방통신원 10등급 시보에 입학 · 3호봉을 급함 ·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규 유은대 · 지방통신원 10등급에 입학 · 6호봉을 급함 ·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규 이수한 · 지방화공원 10등급 시보에 입학 · 3호봉을 급함 · 난지하수처리 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최재호 · 지방화공원 10등급 시보에 입학 · 1호봉을 급함 · 난지하수처리 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김지강 · 지방조무원 (주차단속) 10

등급 시보에 입학 · 1호봉을 급함 ·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규 한혜숙 · 지방조무원(보모) 10등급 시보에 입학 · 1호봉을 급함 ·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 입찰공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공고 제1997-45호  
용역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역명	산출금액
97-45	서울계상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71,383,000

- 공사방법 : 일반경쟁입찰로 총액입찰
- 입찰일시 및 장소 : 1997. 8. 26(14:00) 우리 교육청 대강당(4층) (도봉구 장5동 1, 4호선 창동전철역, 도봉구청 본관 방향 200m)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1997. 8. 13. (11:00) 우리 교육청 시설과(4층)
-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 : 건축기사 2급 이상, 의무사항은 아님
-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1997. 8. 25. (18:00) 우리 교육청 재무과(1층)
- 입찰참가자격 :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
  - 나.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서울시내인 업체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이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하는 경

- 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의 면제기준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 및 취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서류 :
    - 가.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업자등록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록의 대표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서울특별시 각 구청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과 입찰참가신청서
    - 다. 조달청 입찰등록증 소지자는 입찰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입찰참가신청서

11.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계약서, 설계도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본 공사는 상시투찰(우편입찰 불가)이 가능하며, 우리 교육청에 설치된 지정 상시투찰함에 투입된 입찰서에 한하여 유효 처리되며, 입찰시간 전까지 투찰할 수 있습니다. 상시투찰은 입찰일 3일 전부터 입찰시작 전까지 투찰할 수 있습니다(예정가격 및 90% 금액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13. 본 공사의 입찰은 10개의 예비가격 중 3개를 추천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90% 이상 입찰자가 없는 경우도 포함) 재공고 입찰에 부합니다.

1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일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1997. 8. 27. (10:00)에 우리 교육청 재무과에서 추천하며, 추천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시는 국가를당사자로서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신 추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5. 기타  
 가. 입찰참가신청서에는 반드시 원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시

결과(996-7981)나 재무과(997-6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본 공사의 복수에비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71,312,376 ② 71,159,376
- ③ 71,021,376 ④ 70,885,376
- ⑤ 70,741,376 ⑥ 70,579,376
- ⑦ 70,454,376 ⑧ 70,298,376
- ⑨ 70,177,376 ⑩ 70,109,376

1997. 8. 11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경리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공고

제1997-30호

물품구매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급식학교 조리기계·기구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자동식기세척기 2대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라. 인도조건 : 남풍장소(서울월곡, 송중초등학교)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현품사양 설명일시 및 장소 : 1997. 8.

18. (월) 14:00 우리 교육청 2층 회의실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1997. 8.

23. (토) 17:00 우리 교육청 재무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1997. 8. 25. 14:

00 우리 교육청 입찰실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서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주방기구 관련 제조 및 도매)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로 기일 내에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자

6. 입찰참가 유의사항 : 본건 응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

전, 당해계약의 특수조건, 물품사양서, 현품사양설명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서류(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보증금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물당사자로서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국가물당사자로서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본 물품구매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11. 기타사항 :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1997년 8월 26일 11:00 우리 교육청 재무

과에서 추첨하며, 추첨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물당사자로서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신 추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재무과(987-0207), 또는 사회교육체육과(982-947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입찰결과는 광고사서함(152-9850)으로 자동 안내하여 드립니다.

1997. 8. 1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경리관

●서대문구공고제1997-207호

공영노상주차장운영사업자선정입찰  
재공고

주차장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사업자선정 입찰을 재공고합니다.

1997. 8. 11

서대문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번	입찰명	위치	규모		비고
			구획수	면적(m <sup>2</sup> )	
1	미군동 철길변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서대문구, 미군동 117-4-91	33	495	

2. 위탁관리기간 : 1년 기간 단위로 하되 본인 희망시 2차, 3차 재계약 가능  
○ 미군동 철길변 공영노상주차장 : 97. 9. 11 ~ 98. 9. 10(1년간)

3.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가. 운영시간  
평일 : 09:00 ~ 19:00

토요일 : 09:00 ~ 15:00  
공휴일 및 일요일 : 무료 운영  
나. 주차요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2급지 적용  
※ 단) 조례 및 금지조정 변경시에는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 4.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등록기한 : 1997년 8월 22일 (금) 18:00까지
  - 나. 입찰등록장소 : 서대문구청 교통지도과(2층)
  - 다. 지참물 : 구비서류
- 5. 사업설명 : 설명(유인물 대체)
- 6.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 1997년 8월 25일(월) 10:00
  - 나. 장소 : 서대문구청 구내식당(지하 1층)
- 7. 입찰참가자격 :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법인 도는 개인
- 8. 입찰방법 : 상시입찰을 실시하며 상시입찰은 입찰등록 이후부터 입찰개시 전까지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투찰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유찰이 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9. 상시투찰함 : 서대문구청 교통지도과(2층) 공영주차장 입찰함
- 10.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당업자로 선정된 자 중 입찰참가 제한기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을 입찰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증권 포함).
  - 나. 입찰보증금 반환시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 12. 구비서류
  - 가. 입찰등록
    - ① 주차장 수탁관리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③ 인감증명서(용도 : 공영노상주차장 수탁관리 입찰참가용) 1부 및 인감도장
    - ④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
    - ⑤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1부
    - ⑥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입찰참가자 : 입찰등록시 사용한 인장 및 주민등록증, 단)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의 증명서류(위임장) 1부
- 13.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14.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15. 관리계약 체결 : 사업자 선정(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관리금(낙찰금) 전액을 납부하고, 동시에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6. 계약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교통지도과(330-14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 글	서 종 령	② 소 속	강남구 도곡제2동
		한 자	徐鍾烈	③ 직 명	지방행정주사
	④ 주소	서울시 강남구 주곡④ 699-1311			
⑤ 출석이유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과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				
⑥ 출석일시	1997년 8월 20일 14:00				
⑦ 출석장소	서울특별시청 3층 기획상황실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절 취 선)

## 진술권포기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명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7년 월 일  
성명 (인)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박근희	② 소속	영등포구 구의회사무국
		한자	朴根熙	③ 직명	지방별정직 8급상당
	④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851-10			
	⑤ 출석이유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과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			
	⑥ 출석일시	1997년 8월 20일 14:00			
	⑦ 출석장소	서울특별시청 3층 기획상황실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절 취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명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7년 월 일  
성명 (인)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